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2022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EPORT

저작권 침해 이슈리포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현황 조사

I. 들어가며

페이스북,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SNS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타인과 공유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을 뜻한다. 과거 단순히 텍스트나 사진을 올려 정보를 교류하던 텍스트 기반의 SNS 정보전달 방식은 서비스 유형이 다양해지고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디오, 동영상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던 개방형 SNS 형태에서 다수가 하나의 관심사를 두고 참여하는 소셜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운영 중이다.



저작권 침해 관점에서 SNS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올리거나 타인의 콘텐츠에 접근 가능한 URL 주소를 링크(리트윗 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재산권의 제한(공정이용, Fair use)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SNS 이용자들 대부분은 낮은 저작권 인식 탓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 정작 게시자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면서도 불법 공유 목적으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불법 공유 목적으로 암암리에 다양한 저작물을 공유하는 폐쇄형 소셜 커뮤니티나 일시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어 불법으로 저작물을 공유하고 채팅방을 닫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SNS의 특징인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이 오히려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데 악용되고 있으며, SNS 서비스 플랫폼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하나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불법복제물이 SNS를 통해 유통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등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관련(제101조의3부터 101조의5까지)

-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전을 위한 복제 등)

II. 조사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영화’, ‘방송’, ‘음악’ 등의 저작물을 권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현황 조사’ 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가 발생된 SNS명’, ‘침해 저작물명’, ‘침해된 저작물의 장르’, ‘침해된 저작물의 권리자(국가)’ 등의 항목을 수집하였고, 플랫폼 선정은 국내 이용자가 활발하게 이용하는 ‘텔레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표] 조사개요

- (조사기간) '22. 6. 7.(화) ~ 6. 16.(목), 10일간
- (조사대상) SNS 플랫폼(텔레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 (방법) SNS 플랫폼별 키워드 검색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물 현황 조사

수집항목		
침해 발생 SNS명	침해 저작물명	침해 저작물 장르
침해 저작물 권리자	침해 게시물 URL	침해 저작물 국가

- (분석)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유형 및 현황 분석

III. 분석결과

1. SNS별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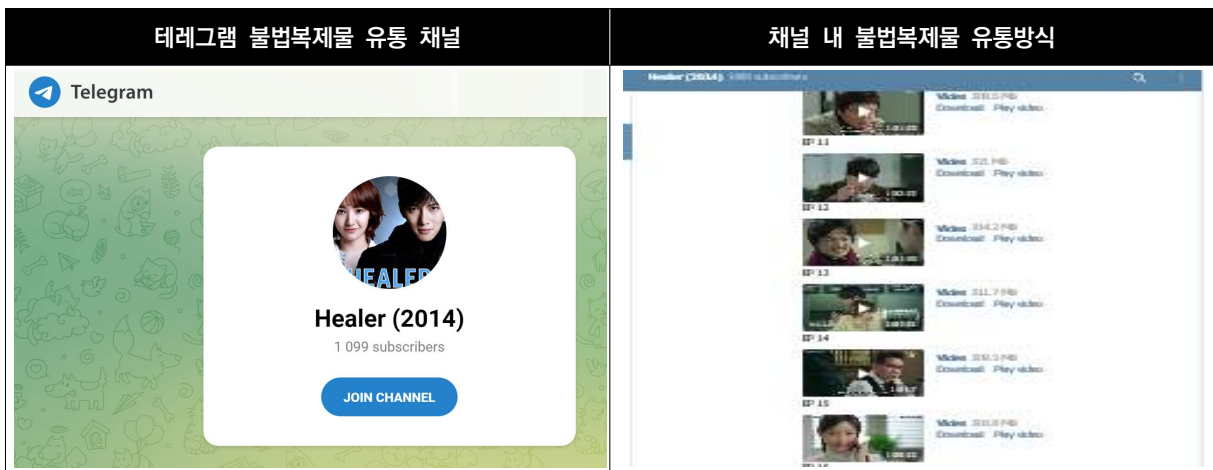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기간 동안 확인된 SNS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8,108개로 확인되었다. SNS별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텔레그램’ 총 2,440건(30.1%), ‘페이스북’ 총 1,668건(20.6%), ‘디스코드’ 총 1,589건(19.6%), ‘인스타그램’ 총 1,583건(19.5%), ‘카카오톡 오픈채팅’ 총 770건(9.5%), ‘트위터’ 총 58건(0.7%) 순으로 나타났다.

●●● [표] SNS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및 비중

구분	텔레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합계
건	2,440	1,668	1,589	1,583	770	58	8,108
비중(%)	30.1	20.6	19.6	19.5	9.5	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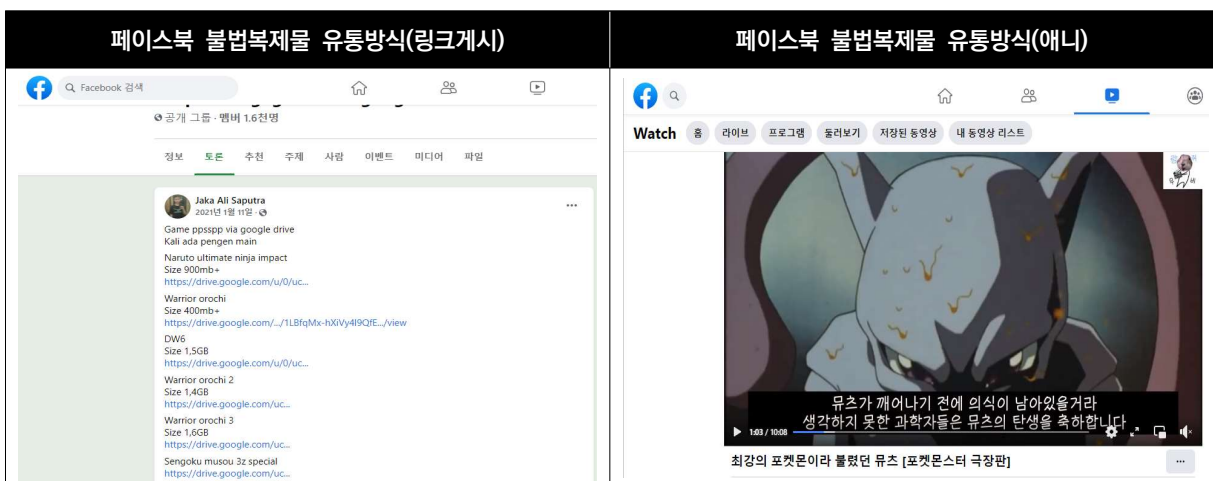
가장 많은 유통량을 나타낸 텔레그램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용자가 이용 중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며 지원 운영체제는 PC(windows, macOS, Linux), 모바일(Android, iOS, Windows Phone). 브라우저(Chrom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매우 강해 수사기관의 감청이 힘들고 영장에 의한 수사가 힘들어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8월 언론에 최초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된 N번방 사건도 이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불법복제물 유포자가 채널을 개설한 다음 동영상 등의 저작물을 올려 채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림]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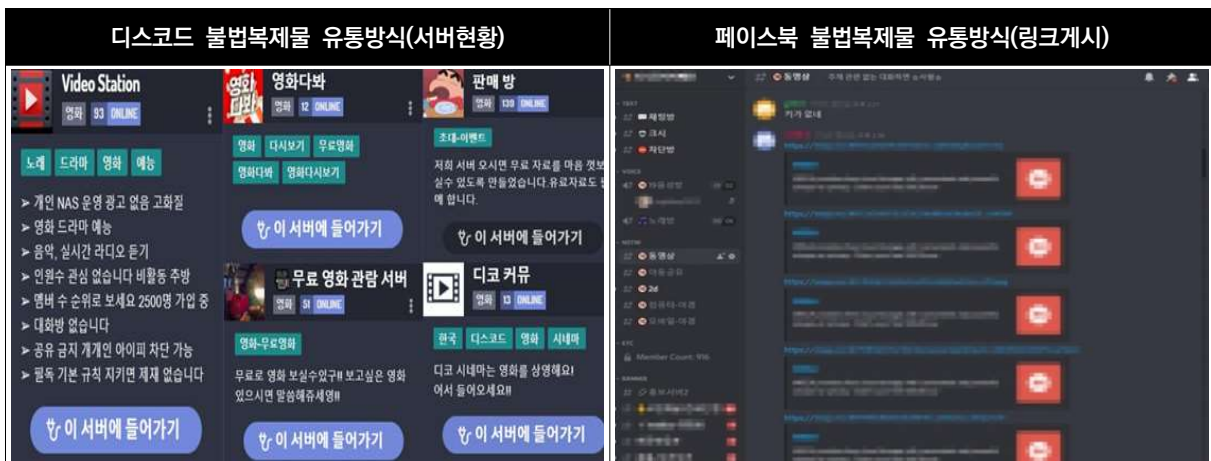
두 번째로 많은 유통량을 보인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형으로 시가 총액이 616조 원 (2022년 4월 26일 기준)이나 되며, 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기존에 성행하던 카카오토티를 재치고 누구나 쓰는 보편적인 SNS로 등극하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저작물을 올려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영상이 아닌 게임이나 SW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 후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도 확인되었다.

●●● [그림] 페이스북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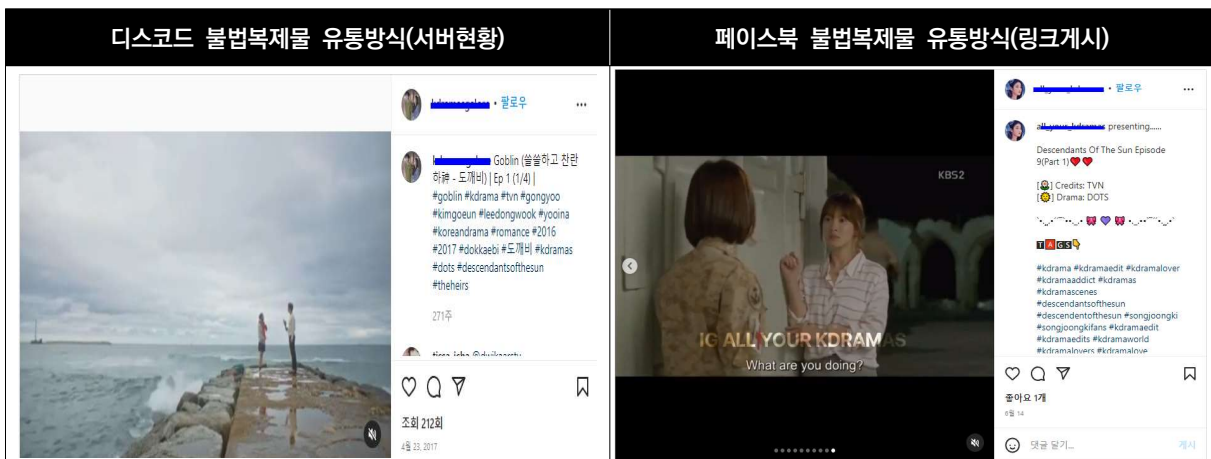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유통량을 보인 디스코드는 2020년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뽑은 최고의 소셜 미디어로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디스코드는 이용자들이 개인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화, 음악, 게임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자료를 공유하기도 한다. 디스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커뮤니티 서버를 구축한 후 게시판을 통해 영상,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후 서버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면공유라는 기능을 통해 영화나 방송 등 영상물을 재생하는 화면을 공유하는 방식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도 확인되었다.

●●● [그림] 디스코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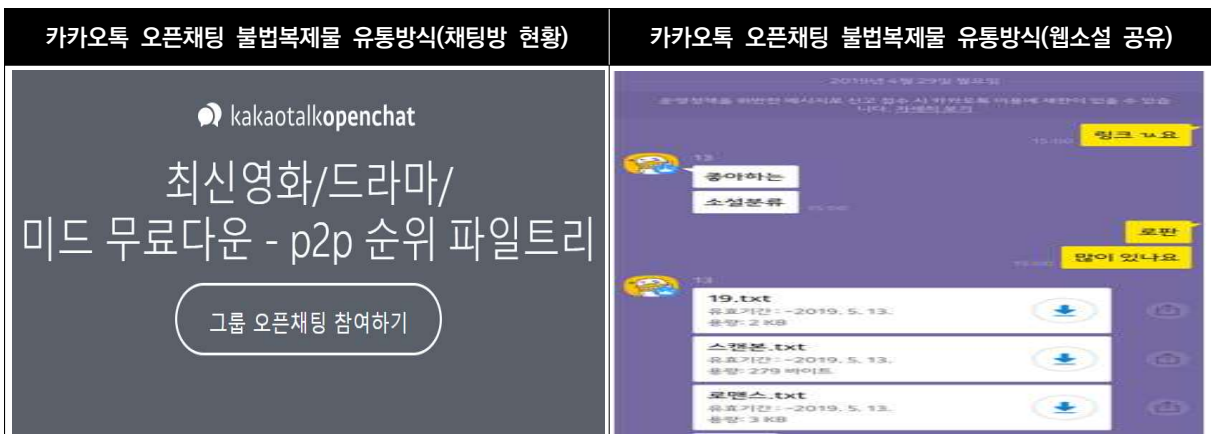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유통량을 보인 인스타그램은 메타(페이스북)에서 인수한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해시태그를 사용하는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다르게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기능은 막강한 편이며, 대체로 이용자들은 게시물에 항상 해시태그를 사용한다. 특이한 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플랫폼 특성상 영화나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올리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동영상 업로드 용량에 제한이 있어 영화나 방송의 주요 장면을 짧게 편집하여 여러 편의 동영상으로 올리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었다.

●●● [그림] 인스타그램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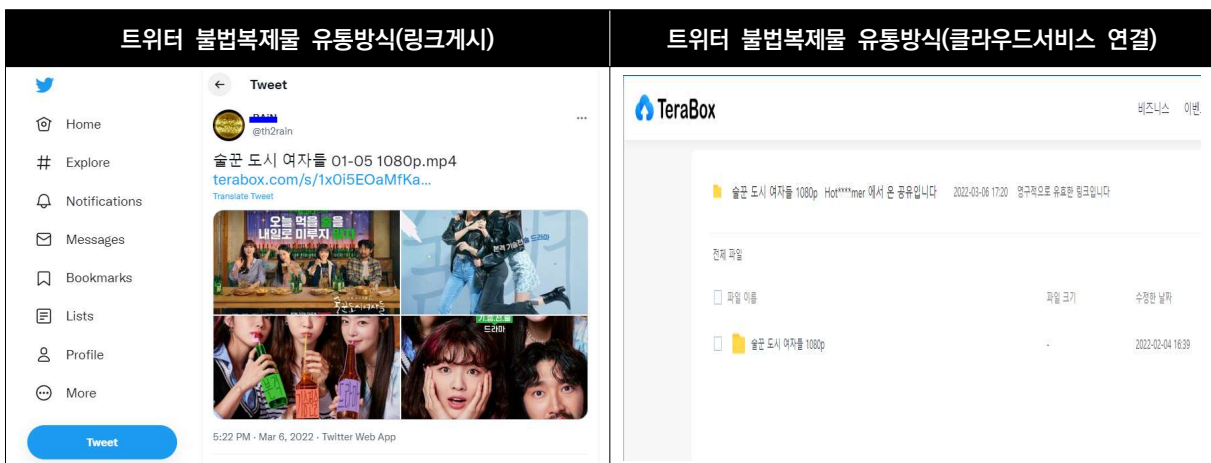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오픈 채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취미와 친목을 진행하거나 정보교환, 파일 공유 등의 목적으로 개설이 된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과 연락을 위해 형성되기도 하며, 직장에서 팀단위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개설되기도 한다. 간혹 사람들이 그룹 채팅과 헷갈리는데, 그룹 채팅은 카카오톡을 통해 등록된 친구를 초대하여 만들어지며, 오픈 채팅방은 채팅방 링크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폐쇄형 오픈 채팅방도 존재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영화, 음악, 웹소설 등 주제를 정하여 한 사람이 오픈 채팅방을 공개하면 참여를 통해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그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방식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유통량을 보인 트위터는 국내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부터 페이스북과 함께 알려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페이스북과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으나 인스타그램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성장하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갤럽 조사자료를 보면 2020년 국내외 트위터 연간 이용률¹⁾은 14%로 나타났다.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영상저작물을 짧게 올리거나, 내려받기가 가능한 외부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었다.

●●● [그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방식



1) 국내외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간 이용률은 유튜브 86%, 네이버 밴드 44%, 카카오톡 40%, 페이스북 35%, 인스타그램 31%, 트위터 14%, 틱톡 10% 순으로 나타났다.(출처: 한국갤럽, 2021 미디어·콘텐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확인된 불법복제물 총 8,108건에 대한 국내외 콘텐츠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콘텐츠는 총 5,107건(63.0%), '국외' 콘텐츠는 총 3,001건(37.0%)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콘텐츠가 '국외' 콘텐츠보다 26.0%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불법복제물 국내외 콘텐츠 유통량 및 비중

구분	국내	국외	합계
건	5,107	3,001	8,108
비중(%)	63.0	37.0	100.0

SNS별 국내외 콘텐츠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콘텐츠는 '텔레그램' 총 2,404건(47.7%), '인스타그램' 총 1,569건(30.7%), '페이스북' 총 545건(10.7%), '디스코드' 총 389건(7.6%), '카카오톡 오픈채팅' 총 142건(2.8%), '트위터' 총 58건(1.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 콘텐츠는 '디스코드' 총 1,200건(40.0%), '페이스북' 총 1,123건(37.4%), '카카오톡 오픈채팅' 총 628건(20.9%), '텔레그램' 총 36건(1.2%), '인스타그램' 총 14건(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SNS별 불법복제물 국내외 콘텐츠 유통량 및 비중

구분	텔레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합계
국내 (건, %)	2,404	545	389	1,569	142	58	5,107
	47.1	10.7	7.6	30.7	2.8	1.1	100
국외 (건, %)	36	1,123	1,200	14	628	-	3,001
	1.2	37.4	40.0	0.5	20.9	-	100

2. SNS별 불법복제물 장르 유통 현황

확인된 불법복제물 총 8,108건에 대한 장르별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방송' 총 6,523건(80.5%), '영화' 총 795건(9.8%), '음악' 총 752건(9.3%), '게임' 총 35건(0.4%), 'SW', '만화', '소설' 각 1건으로 나타났다.

●●● [표] SNS별 불법복제물 장르 유통량 및 비중

구분	방송	영화	음악	게임	SW	만화	출판	합계
건	6,523	795	752	35	1	1	1	8,108
비중(%)	80.5	9.8	9.3	0.4				100

장르별 국내외 콘텐츠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콘텐츠 장르는 ‘방송’ 총 4,691건(91.9%), ‘영화’ 총 269건(5.3%), ‘음악’ 총 144건(2.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 콘텐츠 장르는 ‘방송’ 총 1,832건(61.0%), ‘음악’ 총 608건(20.3%), ‘영화’ 총 526건(17.5%), ‘게임’ 총 33건(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장르별 국내외 콘텐츠 유통량 및 비중

구분	방송	영화	음악	게임	SW	만화	출판	합계
국내 (건, %)	4691	269	144	2	1	-	-	5,107
	91.9	5.3	2.8					100
국외 (건, %)	1832	526	608	33	-	1	1	3,001
	61.0	17.5	20.3	1.1				100

IV. 맺으며

정보 공유와 접근 매체가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가짜뉴스, 불법복제물 등 불법콘텐츠가 크게 범람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나 운영자 등에 관한 책임을 가중시켜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인지한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²⁾ 하지만 현실을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서비스는 행정 조치 또한 불가능하여 권리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자들의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거나 적극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³⁾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범위와 방식은 매우 광범위하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스트리밍, 링크제공, 폐쇄형 운영 등 그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관한 책임을 온전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한다는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올바른 저작물 사용을 위해 공정이용법리(Fair use doctrine)를 통하여, 적정한 안의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3)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에 관하여는 김정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13; 정완,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20호 2003 등 참조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기획·집필 |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
조사·통계 | 최효빈, 양혜지, 서형관 주임